

2019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0차)

◦ 위원회의통보 : 2019.1.15.(화) / 회의개최 및 안건공고 : 2019.1.16.(수)

1. 일시 및 장소 : 2019. 1. 23(수) 14:00, 대학본관(2층) 회의실
2. 참석인원 : 김성중 (위원장), 김화선, 문용국, 한규택, 최재완, 안정석, 최현순, 김종성
이상 8명 참석 ※ 불참인원 : 임정은, 이승수
3. 개회선언 및 기도 : 김성중 위원장이 성원됨을 확인 개회선언 후 기도로 시작함
4. 안건 1) 2019학년도 등록금책정안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비용 책정안
3) 2018학년도 대학교비추가경정예산안 4) 2019학년도 대학교비예산안 5) 잉여금처리원칙
5. 안건심의 및 의결사항

1) 2019학년도 등록금책정안

김성중 위원장이 우리대학 재학생수 추정 값, 교육품질의 보장을 위한 우수 교원 확보, 정부의 등록금인상을 선정 방법 공고,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등 등록금책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근거에 대해 설명함.

김성중 위원장이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준수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평균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함. 평균등록금 동결을 위해 학과별 등록금 조정내역을 설명함(간호학과 학기당 등록금 3,293천원에서 3,300천원으로 조정, 세무회계과, 경영과, 금융정보과, IT융합비즈니스과는 각각 2,750천원에서 2,728천원으로 조정)입학금은 정부의 입학금 폐지정책에 맞춰 전년도 614,000원에서 2019학년도에는 518,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설명함.(산업체위탁, 계약학과 및 전공심화과정 입학금은 폐지함)이에 최현순 위원이 학과별로 등록금을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김성중 위원장이 학과별로 등록금을 조정하는 이유는 평균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조정대상 5개학과중 1개학과를 제외하고 4개학과는 인하되기 때문에 학생 전체로 보서는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김성중 위원장이 학과등록금책정(입학금포함)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현순 위원 동의, 김화선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비용 책정안

김성중 위원장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유예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을 강제할 수 없음과 유예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수강 등 학점 이수 가능 사항과, 수강에 따른 등록금 등을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설명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비용은 사용료와 수업료를 말함)

서명	김성중	김화선	문용국
	김성중	김화선	문용국
	최재완	최현순	안정석
	최재완	최현순	안정석
	김종성	한규택	
	김종성	한규택	

김성중 위원장이 ① 사용료에 관한 사항(사용료는 별도의 수강을 하지 않는 유예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 및 학적보유 등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이 수반되는 비용)을 설명하고 사용료부과와 책정안(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학기당 150,000원/학기당 200,000원/학과당 300,000원/학기당 75,000원)에 대해 위원의 의견을 물음. 이에 김종성 위원이 학교시설이용이나 학적보유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나,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최재완 위원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함. 최현순 위원은 유예학생의 학적을 보유해야 하는 행정비용과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김종성 위원의 의견과 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하고, 향후 진행내용을 검토하여 재논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김성중 위원장이 ① 사용료에 관한 부과와 책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김종성 위원 동의 및 김화선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를 부과하며, 사용료는 학기당 75,000원으로 결정함.

김성중 위원장이 ② 수강학생에 대한 등록비용(사용료와 수업료)에 관한 사항과 책정안(수업료는 1학점당 70,000원으로 하며 사용료를 부과함/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하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의 의견을 물음. 이에 김종성 위원이 수업료는 유예학생 본인이 필요에 의해 수강을 신청하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인 1학점당 70,000원이 적정해 보이나, 사용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학생 부담완화를 위해 1학점당 50,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김성중 위원장이 김종성 위원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용국 위원 동의 및 안정석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강학생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은 수업료는 1학점당 50,000원으로 하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함.

김성중 위원장이 ③ 등록비용 반환에 관한사항과 책정안(<개강전>:사용료와 수업료 전액반환/<개강후>: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개강후> 사용료 및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의 의견을 물음. 이에 문용국 위원이 개강 후에는 사용료와 수업료 모두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김성중 위원장이 문용국 위원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종성 위원 동의 및 안정석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등록비용 반환에 관한 책정은 개강 전에는 사용료와 수업료 전액을 반환하며, 개강 후에는 사용료와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함.

서명	김성중 김성중	김화선 김화선	문용국 문용국
	최재완 최재완	최현순 최현순	안정석 안정석
	김종성 김종성	한규택 한규택	

3) 2018학년도 대학교비추가경정예산안

김성중 위원장이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평생교육원회계, 기숙사회계)사유를 설명함.(전기결산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당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액의 예산일치(244,303천원), 2019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증가에 따른 연구학생경비 증액(147,000천원), 평생교육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에 따른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변경 등)김중성 위원이 평생교육원 수입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함. 이에 김성중 위원장이 평생교육원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인 2018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사업을 유치하여 이에 대한 수입예산이 늘어남을 설명함. 김성중 위원장이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화선 위원 동의, 안정석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4) 2019학년도 대학교비예산안

김성중 위원장이 2019학년도 대학재정여건,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2018학년도 예산자체 분석에 따른 2019학년도 예산편성반영, 긴축예산편성, 행정단위별 총액예산제도 운영, 사업예산제도시행, 세목편성 등)대학수입예산(평균등록금 동결, 등록금수입예산액 등)대학지출예산편성(장학금의 편성, 회의비, 강사료, 공연사례비, 지도비 대학예산표준단가 적용편성 등)에 대해 설명함. 또한, 예산편성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서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교비의 균형예산을 편성함을 설명함. 김성중 위원장이 비등록금회계 예산 편성에서 적립금 사용(임의기금인출, 임의교육환경개선인출, 기자재집기매입인출)에 대해 설명함. 김성중 위원장이 2019학년도 대학 예산 규모는 등록금회계 26,571,974천원, 비등록금회계 19,156,220천원, 평생교육원회계 575,780천원, 기숙사회계 823,5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함. 이에 최현순 위원이 비등록금회계인 경우 적립금 사용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이에 대해 김성중 위원장이 자유관(2층)교육환경개선과 신설학과(진리관)에 대한 실습실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설명함. 최현순 위원이 등록금회계에서 보수 예산 감소에 대해 질의함. 이에 김성중 위원장이 보수예산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수하여 책정하며, 2019학년도에는 퇴직자에 대한 보수 예산의 변동이 있어 감소의 원인이 됨을 설명함. 김성중 위원장이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대학교 비예산안은 김화선 위원 동의 및 최현순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서명 김성중 김 성 중 김화선 김 화 선
 최재완 최재완 최현순 최 현 순
 김중성 김 중 성 한규택 한 규 택

문용국 문 용 국
안정석 안 정 석

5) 잉여금처리원칙안

김성중 위원장이 잉여금개념(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연구학생지원비 사용을 통해 직접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설명함. 이에 문용국 위원 동의 및 김종성 위원 재청,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6. 폐회 : 김성중 위원장이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15:10 폐회를 선언함.

붙임 1. 2019학년도 등록금책정안

2. 학위취득유예자등록비용책정안

3. 2018학년도 대학교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학년도 대학교비예산안. 끝.

2019. 1. 23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김성중

김성중

김화선

김화선

문용국

문용국

최재완

최재완

최현순

최현순

안정석

안정석

김종성

김종성

한규택

한규택